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

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,
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,

지난 2021년 1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「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의결되었고, 동 법률안을 통해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.

또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이 「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」에 규정됨에 따라 각 세입에 맞는 세출의 항목을 작성하여 원활한 사무 처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.

이에 상위법 개정내용을 동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제7조의 2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아무쪼록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를 통해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출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「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